제76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국방부)	1.유사명칭 사용금지(신설)국방대학교가 아니면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함	1.비중요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비금속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및 검사항목·기준(강화)이번 개정으로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기존 금속탐지기에 추가로 비금속탐지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함	1.비중요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	1.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신설)해양조사·정보업으로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조사장비와 유효기간을 규정함	1.비중요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1.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신설)○ 최초로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날 때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별 구분, 이수시기 등을 규정2.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신설)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교수요원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3.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재지정 제한(신설)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이수 사항을 거짓으로 처리한 경우,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1. 2. 3. 4. 5.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고,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4.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기준(신설)ㅇ ‘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5.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기준(신설)ㅇ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대행업무 정지처분 유예기간을 90일로 지정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환경부)	1.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규정 명시(신설)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처리업체 위탁 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함2.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신설(신설)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을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로 추가함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별로 구체적인 수집·운반,보관, 처분 기준 신설	1.비중요 2.비중요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환경부)	1.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신설)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분류 기준 마련 - 지정폐기물 분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신설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별표4]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에 대한 분류번호 부여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규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가공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14조의3에서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추가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의 천연방사성핵종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강화)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sw프리랜서 추가	1.비중요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질병관리청)	1.행정처분 기준(신설)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10과 같다.	1.비중요
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부)	1.부정행위 금지 강화(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강화)○ (목적)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 운영규정의 미비점 개선○ (수단)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공동주택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원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수행 및 입주민 편익 증대 기대	1.비중요
1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국토교통부)	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칙(신설)-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이 공사감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고 현장 확인후 시정조치- 2m 이상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후 착수	
1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매매업자의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 행정처분 강화(강화)매매업자가 성능점검내용을 미고지·거짓고지 한 경우 제재 처분을 강화(3차 위반시 등록취소 → 2차 위반시 등록취소)2.매매계약 해지시 매매업자의 매매금액 미반환 처벌을 위한 행정처분 신설(신설)계약해지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비중요 2.비중요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보훈처)	1.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취소 규정(신설)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 인증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하기 위함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기준, 절차, 인증의 표시, 유사표시 금지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	1.비중요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	1.복수의결권 발행 보고(신설)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은 발행내용, 중요사항 변경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1.비중요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연구실 비치 보호구의 종류 규정(신설)ㅇ 수행하는 연구활동 특성(화학 및 가스, 생물체, 물리인자 등)별 비	1.비중요 2.비중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치·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 규정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신설)ㅇ 연구실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규정3.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신설)ㅇ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임시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 등 세부 실시 기준 규정4.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신설)ㅇ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요3.비중요4.비중요
15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신설)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과정·결과 자료 보호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1.비중요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강화)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시 안전망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 부과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강화)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의무 부과3.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강화)체육교습업자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강화)체육교습업자의 체육지도자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배치 기준 신설	
17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열수송관 비파괴검사 대상 확대(강화)열수송관 사용전 검사 시 용접이음 개소 전체 비파괴 검사 시행2.누설검사의 합격기준(신설)열수송관 정기검사 시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반영한 감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육안을 통한 누설검사의 합격기준을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18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국토교통부)	1.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신설(신설)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실무수습 교관, 운전 또는 관제면허 교육기관의 교수, 철도운영기관의 지정된 강사 등 마련	1.비중요
19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해양수산부)	1.부산항 신항 항행 최고 속력(신설)부산항 신항 속력제한 12노트 신설	1.비중요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스마트물류센터 인증대상 및 기준 신설(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로 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을 기능영역·기반영역으로 구분하며, 첨단화·자동화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차등부여2.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의무 부과(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신청 절차(법 제21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신청인 자격, 신청서류 등 조항 신설3.스마트물류센터 재심사 비용납부 의무 부과(신설)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 근거 신설 및 재심사 비용 추가 납부 규정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사업자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 부과(신설) -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법 제21조의4제6항)을 구체화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위원회)	1.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의 정의 및 요건(신설)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면서 해당 증권 발행과 관련된 규제를 마련2.소액공모 관련 의무강화(신설)소액공모 자금조달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 및 100억원 이하로 확대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신설)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이에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한 규제 마련	1. 2. 3.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정거래위원회)	1.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적용범위(신설)-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2.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신설)- 중개서비스의 구체적내용, 수수료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3.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계약내용 변경 및 제한 등의 사전통지(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제한 또는 일시 중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이전, 중개계약을 해지하	1.중요2.중요3.비중요4.비중요5.비중요6.비중요7.비중요8.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 통지4.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신설)-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등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금지5.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신설)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6.서면실태조사 근거 신설(신설)-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7.법 위반 중개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신설)-계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8.동의의결을 신청할 중개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 조치 고시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생산업자 신고의무 부과, 판매업자 신고의무 부과, 조정명령 조치(신설)ㅇ ‘20.8.6일 제정·시행 중인 고시*가 ‘21.1.5일자로 만료(물가안정법상 최대 5개월 기한)됨에 따라 새로운 고시 제정 필요 * 1차 제정(3.6) → 개정(7.1, 유효기간 연장) → 2차 제정(8.6) → 개정(10.23, 수출규제 폐지) 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신고의무(제3조, 제4조) - 일일 생산량·구매량·판매량 등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신고기한의 예외를 규정 나. 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한 조정명령(제5조) - 산업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 수량, 출고·판매처 등 조정명령 가능	